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19

발의연월일: 2025. 3. 13.

발 의 자:임호선·김재원·문대림

이재정 • 차지호 • 정준호

정일영 · 김동아 · 김영진

권향엽 · 김승원 · 김주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, 이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「농어촌정비법」 및 「하천법」 등에 따른 승인·허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인·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.

그런데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는 인·허가 의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, 농지에서 양식업을 하려는 경우 농지의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임.

이에 인·허가 의제 대상에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신속성·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을 해 소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제2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「농지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9조(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	제49조(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		
가 등의 의제) 제43조에 따라	가 등의 의제)		
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			
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			
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승			
인 · 허가 등을 받거나 협의가			
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			
1. ·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<u>2의2. 「농지법」 제34조제1항</u>		
	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		
3. • 4. (생 략)	3. • 4. (현행과 같음)		